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4. 6. 12.(수) 10:20~11:5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2674
등록일자	2024.07.16.
처리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 장

간 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2024. 6. 1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4. 6. 12.(수) 10:20~11:5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창경, 이지영, 장정환(이상 주무위원)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고병석,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한국 법원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법원을 늘 친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법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큰 영광으로 생각함. 사법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도 그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함.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림

2. 간사 임명

-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함

3. 안건 상정 및 논의 일정 확정

가. 안건 상정

- 위원회는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 및 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한 간사의 보고를 듣고, 대법원장이 1차로 부의한 안건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논의주제로 상정하였음(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음)

- ① 재판절차

- 감정제도 개선
 -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 판결서 적정화
 -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 ② 법관인사제도

-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 ③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 사법보좌관제도 개선
 -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 ④ 사법정보화

-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나. 논의 일정



- 위원회는 안건 논의시기와 관련하여, 7월에는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와 「감정제도 개선」, 8월에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와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을 논의하기로 결정함

4. 전문위원 위촉 및 전문위원 연구반 구성 논의

가. 기초보고

- 간사, 전문위원 연구반 구성(안)을 보고함
- 전문위원 제1연구반(법관 다양화·법관 인사)
 - 전문위원 제2연구반(재판제도 개선)
 - 전문위원 제3연구반(사법정보화)

나. 논의

- 다음과 같은 간사의 설명과 김영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간사
 - 변호사인 전문위원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구성인원이 20인으로 제한된 관계로 대한변협에서 제1연구반과 제3연구반의 겸임을 요청하였고, 의견을 수용하여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하였음
 - 김영훈 위원
 - 대한변협에 제1연구반(법관 다양화·법관 인사) 소속 전문위원 추천의뢰가 들어왔는데, 법관 다양화와 법관 인사뿐만 아니라 사법정보화 문제도 향후 법원 재판제도 운영이나 변호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제3 연구반(사법정보화)에 대한변협 추천위원이 포함될 수 있기를 요청드렸음
 -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하여 과거 변협은 사설법률플랫폼에 법률시장을 내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면 금지 입장이었으나, 본인이 협회장을 맡은 이후로는 경쟁을 전제로 하여 사설법률플랫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법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법원에서 사법정보화를 준비할 때 변호사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론주의, 당사자주의가 형해화되어 직권주의화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음. 법률 AI 작업은 법원과 변호사들이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를 수용해주어서 매우 감사드림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간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제3연구반(사법정보화) 구성원의 연령대가 높아서 우려되는 면이 있음. AI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천차만별인데, 연령대에 따라 격차가 큰 것을 목격하였음. 젊은 법관 중 이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 AI 전문가로서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언해주실 분을 염두에 두고 카이스트 총장님 추천을 받아 AI대학원 교수님을 포함시켰고, 내부에서는 관련된 TF에 참석하는 등 전문성을 지닌 분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법원 내부와 외부의 전문성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음

○ 전원열 위원

- 법률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카이스트 교수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함

○ 간사

- 제1, 제2연구반은 재판제도와 관련성이 커서 법조인 위주로 구성하였지만, 제3 연구반은 특수한 기술분야임을 염두에 두고 연구반을 구성하였음. 전문위원을 추천해주신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님은 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총장님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문위원으로 추천받았음을 알려드림
- 전문위원 연령대에 관한 의견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문 위원 본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의견도 적절하게 취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실무지원단장의 답변, 김영훈 위원의 의



견이 있었음

○ 위원장

- 전문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 실무지원단장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제1항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김영훈 위원

- 제3연구반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연령대도 젊고, 법무부와의 플랫폼 문제나 AI 문제를 논의할 때 주무를 맡아서 하던 분임

○ 실무지원단장

- 법원 내에서도 20대나 30대 초반에 AI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법원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운영세칙 상 ‘전문위원 연구반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라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위원회는 논의 후 전문위원 연구반 구성(안) 원안대로 확정함

5. 실무지원단 구성 보고

- 실무지원단장, 실무지원단 명단을 보고함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일정·방식 논의

가. 기초보고

- 실무지원단장,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보고함

나. 운영 일정·방식에 관한 논의

- 다음과 같은 위원장, 김영화 위원의 의견 및 실무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2차 회의가 7월 16일에 진행될 경우,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 실무지원단장
 - 본회의 일주일 전에는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임
- 위원장
 - 화상회의로도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 실무지원단장
 - 운영세칙에서 온라인 방식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음
- 김영화 위원
 -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회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을 권장함
- 위원장
 - 염두에 두도록 하겠음. 대법원에서는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무엇을 활용하는지?
- 실무지원단장
 - 내부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나 줌(ZOOM)으로 하는 방식 모두 가능함

다. 결정사항

- 위원회는 매달 두 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되, 2차 회의는 7월 16일(화), 5차 회의는 10월 16일(수)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함

7. 운영세칙(안) 의결

가. 기초보고

- 실무지원단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보고함

나. 운영세칙(안)에 관한 논의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실무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회의록 초안 작성 후 위원장 결재 전,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



록을 위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실무지원단장

- 속기록과 함께 회의 요지를 정리한 회의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회람할 것이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록이 될 것임

다. 결정사항

- 위원회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원안대로 확정함

8. 서기 지명

- 위원장, 의결된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이문렬 사무관을 서기로 지명함

9. 웹 공간, 코트넷 게시판 운영방안 논의

가. 기초보고

- 실무지원단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웹 공간 및 코트넷 게시판 운영 방안’을 보고함

나. 논의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실무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코트넷 게시판에는 위원들이 접속하지 않는 것인지?

○ 실무지원단장

- 코트넷 내부 게시판에는 위원들이 접속하지 않음

○ 위원장

-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피드백을 전달해주시기 바람

○ 실무지원단장

-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 위원회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웹 공간 및 코트넷 게시판 운영 방안’을 원안대로 확정함

10. 전문위원 연구반장 및 주무위원 지명

- 위원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함
 - 전문위원 제1연구반장: 배용준(서울고법 고법판사)
 - 전문위원 제2연구반장: 최우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위원 제3연구반장: 이정엽(법무법인 로집사 변호사)
- 위원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각 연구반의 주무위원을 지명함
 - 전문위원 제1연구반 주무위원: 이창경(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전문위원 제2연구반 주무위원: 이지영(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전문위원 제3연구반 주무위원: 장정환(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11.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

가.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 인사총괄심의관, 안건 주제에 관하여 설명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위원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간사,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는지 아니면 철회되었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이경춘 위원
 - 2021년 부결된 이후로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법조경력 요건과 관련한 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경과조치상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판단 기준 시점을 연장하는 내용이 2021년 말에 부칙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 이경춘 위원

- 본문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시행일을 연기하는 개정안을 올해라도 준비하고 있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현재는 법조경력 요건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은 방법론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주된 논의는 적정한 법조 경력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김영화 위원

- 법률안이 부결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림

○ 인사총괄심의관

-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법조일원화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조경력 상향 조정을 막게 되면 대형 로펌 출신이 대거 임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간사

- 인사총괄심의관에 덧붙여 추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음. 국회 논의 당시 여러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법사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5년 법조경력 이상의 법관을 임용하되,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 판사는 10년 법조경력 이상의 판사로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 그 후 본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앞서 언급된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왔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 9월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후,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연말에 시행 시기를 3년씩 늦추는 부칙개정안이 통과되었음



나. 감정제도 개선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안건 주제에 관하여 설명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위원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이경춘 위원
 - 현실적으로 의료감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도 의료 감정 반송을 5번 정도 받은 경험이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5번의 반송은 보통이고, 심지어 18번 반송된 사례도 존재함
 - 이경춘 위원
 - 과거 고등법원 의료전담부장 재임 때 의료인인 조정위원들과의 소통이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추천드림
 - 김영화 위원
 - 반송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 이경춘 위원
 - 감정 곤란, 감정 불가, 현실적 업무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감정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함
 - 전원열 위원
 - 감정절차를 관리할 기구를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함. 각 재판부가 감정이라는 증거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기구를 통해서 감정인을 지정하게 되는 것인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라는 것은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중앙의 기구가 재판에 간섭하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됨
 - 결국 감정문제 해결의 핵심은 감정료라고 생각함. 외국에 대해서도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료 상승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임. 감정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감정료의 현실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림. 이번 개선 논의 과정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광범위하



게 조사하고, 의료인 출신 법조인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의료전담 법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개선안을 마련한 후 가장 바람직한 안을 건의할 계획임

- 감정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감정료를 획기적으로 증액해서 감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재판절차가 용이해질 수 있지만, 당사자의 소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위원님들께서 감정료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위원장

- 전원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기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단계가 아닌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외국에서는 수탁판사와 유사하게 본안 재판부에서 감정을 채택해서 보내면 수탁판사가 이를 관리하고 회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 본안 재판부의 판단이나 절차 관리 재량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본안 재판부에서 감정을 진행하되 별도로 감정관리센터, 감정관리위원과 같은 기구를 고등법원 권역별로 만드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음
- 대한의협과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인의 전문 과목에 따라 적정한 감정인을 선정하거나, 사전에 감정할 여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노하우가 쌓이면 감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통창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 조현욱 위원

- 감정절차 관리 기구 신설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옥상옥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
-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서식에 특정 문구를 넣어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결과가 신속하게 오도록 하는 방안, 감정인 선정에 있어서 감정 업무 수행 의지가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



즉 문서를 송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또한 현재 재감정 신청이 많은 이유는 당사자의 불신에서 기인하는데, 보험회사 등의 개입을 배제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2.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가. 논의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조현욱 위원, 이경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익명화 여부에 대하여는 오늘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 후 회람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조현욱 위원

- 기본적으로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적인데다가 오늘 회의에서 내밀한 주제가 없었으므로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절차상 적법한 것인지 궁금함

○ 위원장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 비공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결을 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또한 회의록을 회람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경춘 위원

- 위원장님과 조현욱 위원님 취지와 같이, 회의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을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임

○ 위원장

- 운영세칙 제5조 제4항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익명화 혹은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운영세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결정사항

- 위원회는 제1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1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위원회는 제1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 상정 및 활동기간 지정	공개
2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재판절차)	공개
3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법관인사제도)	공개
4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공개
5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사법정보화)	공개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연구반 구성안	공개
7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명단	공개
8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세칙	공개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웹 공간 및 코트넷 게시판 운영 방안	공개
1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	공개

14. 위원장 마무리 말씀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하였음

- 첫 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었음. 수고해주신 법원행정처 관계자, 주무위원님, 실무지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림. 앞으로 남은 활동기간 동안 사법부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음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 일시: 2024. 7. 16.(화) 14: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